

세션3. 평화의 제도화

현 국제 정세를 통해 본 국제법의 한계

아흘람 베이다운

전 베이루트 레바논대학교 법학 및 정치행정학부 교수, 레바논

국제평화와 안보는 오래 전부터 인류의 중요한 목표였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은 다양한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었고, 전쟁 종식과 평화 유지를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었으며, 인류의 생활 안정과 발전을 위해 창설된 국제연합(유엔, UN)의 헌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서구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유엔 헌장을 통해 세계평화와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국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이룰 실현하는 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유엔 헌장과 세계 평화

유엔 헌장에서 말하는 세계 평화는 목표이자 수단입니다. 세계평화는 유엔 헌장의 주요 목표로 강조되고 있으며, 헌장의 거의 모든 조항이 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설정되었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들이 범죄로 간주됩니다.

한편, 세계평화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계 평화를 회복하는 일은 국제 안보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는 인류의 성장 및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연합헌장, 즉 유엔 헌장은 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점을 두며, 국가들이 이를 유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목표와 원칙으로 제공되며 강력한 법적, 윤리적 힘을 가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법적 책임을 지며,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엔 헌장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평등하게 존중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국가로 인정되지 않은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정불간섭의 원칙(principle of non-intervention)에 어긋나는 경우 예방적,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권리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위권을 남용하여 공격 행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격 행위는 초기의 자위 목적 달성 후에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강조하며, 국가 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국의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유엔 헌장 제7장에 명시된 처벌 조치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제7장의 처벌조치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적용됩니다. ‘인도주의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이라 불리는 이 원칙은 1980년대 이후 중대한 변화로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 내부에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때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 내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인류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

두 번째로, 인류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 또는 유엔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국가적 관행 및 유엔의 작동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1) 국가적 관행:

유엔 헌장을 작성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었습니다. 이 헌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합의를 포함하여 승전국의 이익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헌장에는 세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규칙들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는 이러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주권, 민족자결권,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약소국의 자원 착취, 외국의 내정 간섭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 책임’이라는 개념은 강대국의 경제적 지배와 군사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약소국 내부에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타국의 개입을 거부하고 실질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며 혼돈과 분쟁이 야기되었습니다.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실체(entity)들이 생겨났고, 한 지역의 국민에게는 권리를 주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국민에게는 주지 않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분할과 국경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국제 정책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부패, 해결하기 힘든 여러가지 국제적 위기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구소련의 해체로 큰 이득을 취했으며,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국 내부 법률을 근거로 다른 국가, 특히 강대국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2) 유엔과 유엔 헌장:

한편, 유엔 헌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임무를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결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제평화와 안보는 이 5개국의 이해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유엔 헌장의 주요 원칙과 목표를 이루는 데 장애물이 되며, 이로 인해 유엔의 다른 모든 목표의 달성도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는 중범죄자와 주요 범죄자의 처벌을 방해하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은 무시되곤 합니다.

3. 평화와 안보의 달성 방법

세 번째로, 평화를 확산하고 안보를 확립하는 방법에는 국민의 인식과 유엔의 메커니즘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 차원에서 ‘국민’이라 함은 모든 국민을 말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자국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제3세계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자국 정부가 제3세계 국민들에게 가하는 범죄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감시하고, 국민의 무지로 인해 자국 정부가 부당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3세계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 국민들과 국제 사회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약탈로부터 자신의 나라와 천연자원을 지키고,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며,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정치 및 경제 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커뮤니케이션 및 통신 수단의 엄청난 발전은 정보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지구촌 국민들이 상호작용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유엔의 주요 목표인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 사회의 긴장 상태(tension)와 전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국가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며 안보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다 원활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강대국들이 거부권이라는 특권을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인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포기하게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안보리를 개혁하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며, 국제 정의를 위해 이를 중립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원칙에 따라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자원을 약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강대국이 국제 정치, 자원, 전략지구(strategic area)의 지배를 포기하고 세계적인 재앙과 위기를 초래하는 형태로 국가 및 국민에 가하는 제재를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억압과 인종차별을 받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테러와 민족해방운동을 구분하는 규칙, 특히 식민 지배와 관련된 범죄를 구분하는 규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토착민을 억류하고 살해하며 강제 이주시키고, 토지와 자원, 문화유산을 차지하고,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남은 원주민을 차별하는 체제가 그 나라에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콘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새로운 평화국제법의 법안을 담은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